

중국의 공정거래법

본협회 조사부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公正取引」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중국에 있어 경쟁법 도입 배경

1978년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채택 이후 중국은 서서히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여 왔다. 경제면에 있어서의 최대 변화는 경쟁 체제의 도입이다. 이 점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경쟁은 사회나 경제 활동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는 경쟁이 기업에 압력과 원동력을 주어 자원의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용을 실현시켜 주고 '적자 생존'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질서 있게 발전시켜 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경쟁은 사회와 경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당경쟁 행위(unfair competition)나 경쟁 제한 행위(restrictive competition)를 필히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1980년 초부터 관련 정부기관이나 최고입법 기관은 부당경쟁 행위와 경쟁제한 행위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 각종 거래 관행에 대한 검토 결과와 타국의 입법 경험을 참고로 중국 역사상 경쟁정책에 관한 최초의 특별법인 '不當競爭禁止法'을 1993년 9월 2일에 채택하게 되었다. 동법은 중국의 경쟁법 발전에 있어 주요한 지표가 된 것이다. '부당경쟁금지법'은 전국인민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아 '國家工商行政管理局'에 의해서 기초가 된 것이다.

이 법을 만들 때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제1안은 부당한 경쟁 행위만을 규제하고 경쟁제한 행위는 제외하되 후자는 앞으로 제정될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규제하자는 안이고, 제2안은 부당 경쟁은 물론, 모든 경쟁제한 행위(엄밀한 의미에 있어 독점을 포함)에 대하여서도 포괄적인 규제를 하자는 안이다(장래에 독점금지법 불필요). 제3안은 일반적으로 부당 경쟁이라 불리우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기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규제하든지 또는 '부당 경쟁금지법'에 포함될 경쟁제한 행위에 관한 규제 속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킨 후 앞으로 '독점금지법'에서 다루도록하자는 것인데, 공포된 '부당경쟁금지법'은 제3안을 채택한 것이다.

1978년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체택 이후
중국은 서서히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여 왔다. 경제면에 있어서의
최대 변화는 경쟁 체제의 도입이다.
이 점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부당경쟁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적·경
제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되었다.

‘부당경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부당경쟁금지법’은 5장 33조로 되어 있으며,
11가지의 부당경쟁 행위를 부당경쟁 금지 행위
로 규제하고 있다.

(1) 위조(偽造)

- 가) 제3자의 등록상표의 절취
- 나) 주지된 제품의 명칭, 포장 또는 장식의
무단 사용 혹은 주지된 제품과 유사한 명
칭, 포장 또는 장식의 사용에 의해서 타사
업자의 주지된 제품과 혼동토록 하여 구매
자로 하여금 타사업자의 제품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 다) 무단으로 타사업자의 상호를 자기 제품
에 사용하는 행위
- 라)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기호를 위조 또
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공익사업자에 의한 거래의 강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
고 있는 공익사업자나 기타사업자가 자기가 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의 물품 구입을 타사업자
에게 강요함으로써 타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행
위를 저해하는 행위

(3) 행정 권한의 남용에 의한 경쟁의 제한

정부 당국이나 당해 하부기관이 자기가 지정
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의 구입을 타인에 강요
함으로써 타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
하는 행위, 또는 타지방으로부터 물품의 반입
또는 타지방에의 반출을 제한함으로써 정상적
인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뇌물 공여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비밀리에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5) 허위 광고

사업자가 제품의 품질, 조성, 사용, 제조자, 수
명, 원산지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
를 제공할 목적으로 광고나 기타의 수단을 사
용하는 행위

(6) 사업상의 비밀 침해

사업자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업상의 비밀(trade secret)을 입수, 개시 또는
사용하는 행위.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표되
지 않은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권리
의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무에의 응용이 가능하고 권리
의 보유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
구하고 있는 것을 말함

(7) 부당 염매에 의한 경쟁의 저해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할 목적을 가지고 일정

의 시장에서 일정 기간 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생선품(生鮮品)의 판매, 유효 기간이 근접한 물품이나 기타 재고 과잉 물품의 처분, 계절적인 가격 인하, 채무 변제, 생산 조정이나 폐업을 이유로한 가격 인하 판매)

(8) 끼워팔기 및 구속 조건부 판매

사업자가 자기의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끼워팔기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

(9) 불공정한 추첨

사업자가 부정한 추첨 방법으로 조작 또는 고액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또는 추첨의 최고액이 5천원(元)을 초과하는 경우

(10) 경쟁자의 신용에 대한 비방

사업자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다던가 페트리움으로써 경쟁자의 신용(good will)을 손상시키는 행위

(11) 공모에 의한 입찰

입찰자가 입찰가격 기타에 관하여 서로 공모함으로써 발주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 또는 입찰자와 발주자가 서로 공모하여 경쟁자를 침해하는 경우

앞에서 열거한 부당경쟁 행위의 대부분은 타국의 경쟁법제에서도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중국 특유의 부당경쟁 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 권한의 남용에 의한 경쟁의 제한을 부당경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 일례로서 외국의 경쟁법에서는 볼 수가 없는 내용이다.

행정 권한에 의한 경쟁에의

개입은 부당경쟁이나 시장 분할을 야기시켜 공정한 경쟁 체제 또는 균일 시장의 구축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관점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제한 행위는 기업의 거래 행태에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나 정부의 행위가 경쟁제한 행위가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정부가 하는 행위가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편역자주 : 중국에서는 정부도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재 중국에서는 기구 개혁에 의한 행정 권한과 기업과의 분리가 완결되지 않고 있어 기업에 따라서는 행정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地方間 또는 道廳間에는 아직도 이해의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각 성·청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권한을 사용하면서 경쟁에 개입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와 같은 행정 권한에 의한 경쟁에의 개입은 부당경쟁이나 시장 분할을 야기시켜 공정한 경쟁 체제 또는 균일 시장의 구축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관점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당경쟁금지법’은 이러한 목적을 반영시키는데 큰 특징이 있다. 동법은 위에서 말한 행위에 대하여 주로 행정벌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3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1만원(元) 이상 20만원(元)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모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 무효 외에 1만원(元) 이상 2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경쟁 행위에 관계되는 민사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은 없다. 또한 부당경쟁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해서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당경쟁금지법’에서는 부당경쟁 행위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군(郡) 단위까지工商行政管理局을 두고 있는데, 이 점도 중국경쟁법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부당경쟁방지법’의 운용

1993년 12월 1일 법 시행 이후 중국의工商行政管理局은 3천건 이상의 부당경쟁 사건을 심사하고 해결하였다. 예를 들면福建省의 기업이河南省에 있는 기업의 주지된 제품과 아주 닮은 포장 및 장식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킨 사건으로 복건성의 공상행정관리국은 당해 행위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 한 예로서 黑龍江省 모란강(牡丹江)시의 酒類獨占局이 타성에서 제조한 맥주에 대하여 동시에의 반입을 제한함으로써 제품 유통에 현저한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 모란강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면밀한 조사 결과 관계 당국에 당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부당경쟁금지법’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상행정관리국은 시장 감시와 집행을 위한 기관이다. 중앙정부에 있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국무원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있다. 각 성에는 성·시 및 군 수준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있다.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의 주요 기능은 각종 기업의 등록 관리, 상표 등록의 관리 및 소비자의 법적 권리의 보호를 포함한 공정한 거래 활동

의 유지에 있다.

최근 각 수준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전술한 부당경쟁 행위를 심사하여 사업자나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제한 행위와 모든 부당경쟁 행위의 심사와 시정조치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공상행정관리국은 중국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으로서 현재 40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의 집행 활동과 사법기관에 의한 사법활동은 상호 독립되어 있지만 상호 협조하고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부당경쟁금지법 제의 시행에 있어 실효성, 공평성 및 엄밀성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 ‘독점금지법’의 기초

중국의 입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독점금지법’ 제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회기 중 입법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외경제무역성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위탁을 받아 이 법안을 기초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동법은 중국의 관행을 기초로 제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경험을 참고로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차별, 협정에 의한 경쟁 제한, 합병 및 시장독점에 관하여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법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국의 입법 당국 및 관련 기관은 적극적으로 ‘부당경쟁금지법’의 운용 경험을 정리하는 동시에 각국의 경쟁당국이나 국제 기관과의 교류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경제에 있어 국제적 관행과 중국의 실제 상황이 서로 합치하게 되는 ‘독점금지법’이 완성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